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8357

발의연월일: 2022. 11. 22.

발 의 자:김한정·김경만·김용민

김정호 · 김회재 · 양이원영

이용빈 · 이용선 · 이장섭

정일영 · 홍정민 의원

(1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의 연구개발이나 사업용 시설투자 등 통합투자에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세액을 공제하는 특례를 두어 반도체, 2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의 경우 연구개발비나 시설투자비의 일정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4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최근 미국은 반도체 지원법을 제정하여 자국의 반도체 산업에 약 69조원(약 520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고, 중국은 '반도체 굴기 2025'를 발표하여 약 200조원에 이르는 자금을 투자하고 반도체 기업에 대하여 최대 10년간 소득세를 면제하기로 하는 등 자국의 첨단전략산업 보호·육성을 위하여 대규모의 지원을 하고 있으나 우리 나라의 경우는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지원규모가 다른 국가에 비하여 크게 부족하여 국내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저하가 우려되는 실정

임.

이에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비와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과세특례 적용기한을 각각 2030년 12월 31일까지 6년 연장하고, 이와관련된 세액공제율을 상향함으로써 첨단전략산업의 진흥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1호 및 제2호는 2024년 12월 31일"을 "제1호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제2호는 2030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1) 중 "100분의 40"을 "100분의 60"으로하며, 같은 목 2) 중 "100분의 30"을 "100분의 45"로 한다.

제24조제1항제2호가목2)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30년 12월 31일"로, "100분의 6"을 "100분의 10"으로, "100분의 8"을 "100분의 15"로, "100분의 16"을 "100분의 30"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본문 중 "100분의 4"를 "100분의 5"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 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 용한다.

제3조(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

례)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아 정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의 연구개 세액공제) ① -----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이하 "연구·인력개발비"라 한 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2024년 12월 제1호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ㆍ 제2호는 2030년 12월 31일----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하 며. 제1호 및 제2호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납 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 하나만을 적용한다.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연구 · 인력개발비 중 국가안 | 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하 "국가전략기술"이라 한다)을 얻기 위한 연구 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에 가목의 비율과 나목의 비율을 더한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가. 기업유형에 따른 비율

- 1) 중소기업에 해당하는경우: 100분의 40
- 2) 그 밖의 경우: <u>100분의</u> 30

나. (생 략)

- 3. (생략)
- ② ~ ⑥ (생 략)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

가
1)
100분의 60
<u>100분의 00</u> 2)100분의
<u>45</u>
나.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①

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1. (생략)
- 2. 공제금액
 - 가. 기본공제 금액: 해당 과 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1 00분의 1(중견기업은 100 분의 3, 중소기업은 100분 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 다.
 - 1) (생략)
 - 2)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이 조에서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이라 한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100분의 6(중견기업은 100분의 8, 중소기업은 100분의 16)에 상당하는 금액

 1. (현행과 같음)
1. (包努力 全日) 2
ン. フト
1) (현행과 같음)
2)
2030년 12월 31일
<u>100분의 10</u>
<u>100분의 15</u>
<u>100분의 30</u>

나. 주가공제 금액: 해당 과
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
간 연 평균 투자 또는 취
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는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
0분의 3(국가전략기술사업
화시설의 경우에는 100분
<u>의 4</u>)에 상당하는 금액. 다
만, 추가공제 금액이 기본
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경
우에는 기본공제 금액의 2
배를 그 한도로 한다.

② ~ ⑤ (생 략)

나
<u>100분의</u>
<u>100분의</u> <u>5</u>
<u>5</u>